

주
제 .. 주
여 !

이
제

회
복
하
게

하
소
서

(

스
10

..

1

,

12

/

행

3

..

19

|

21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찰요

일 시 : 2020년 9월 21일(월)

장 소 : 도림교회당 외

본 교단 소속 37개 교회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차 례

제105회기 총회조직	1
교 세	3
제 105회 총회 주요결의	4
9월21일 본회의	4
제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회의	8
총 회 임 원 회	8
상임부, 상임위원회	9
특 별 위 원 회	19
총회임원회 자문, 별도, 정기위원회	25
재단 및 산하기관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찰요

출석 : 총 68개 노회 중 68개 노회
 목사 749명 중 734 명
 장로 750명 중 731 명
 합계 1,499명중 1,465 명
 (총회 개회시)

I. 조직

1. 총회 임원회

총 회 장 : 신정호 목사(전 주)	장로부총회장 : 박한규 장로(부 산 동)
목사부총회장 :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부 서 기 : 최충원 목사(경 기)
서 기 : 윤석호 목사(인 천 동)	부 회록서기 : 김준영 목사(목 포)
회 록 서 기 : 박선용 목사(충 청)	부 회 계 : 최효녀 장로(서울강북)
회 계 : 장오표 장로(서울동북)	
사 무 총 장 : 변창배 목사(언권회원)	

2. 상임부

부 서	부 장	서 기	회 계
정 치 부	이성주 목사(서울 동)	윤태현 목사(순 천)	신용부 장로(경 남)
규 칙 부	이명덕 목사(용 천)	마홍락 목사(경 동)	임남관 장로(제 주)
재 정 부	김대권 장로(서울 서)	이형욱 장로(평 양)	이수원 장로(서울동북)
신학교육	민경운 목사(서울 동)	김영일 목사(천안아산)	현정민 장로(서울동남)
재 판 국	이종문 목사(전 남)	김 기 목사(대 전)	박찬봉 장로(경 북)
국내선교	임현희 목사(전 주)	장균원 목사(용 천)	김재봉 장로(인 천)
세계선교	서화평 목사(전 주)	김정현 목사(서울강북)	나선환 장로(서울)
교육자원	황세형 목사(전 북)	이기주 목사(울 산)	박기상 장로(영 등 포)
사회봉사	임한섭 목사(순 천 남)	도영수 목사(경 동)	신동훈 장로(서울서남)
군경교정선교	권위영 목사(서울)	이형준 목사(경 남)	성윤경 장로(충 남)
농어촌선교	김광훈 목사(광 주 동)	이진숙 목사(진 주)	양상주 장로(대구동남)

3. 상임위원회

위 원 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고시위원회	한상영 목사(광 주)	장찬호 목사(서 울 서)	연제국 목사(충 청)
감사위원회	신영식 장로(순 천 남)	신성환 목사(포 향)	박 훈 장로(서 울 동)
헌법위원회	이진구 목사(목 포)	오경남 목사(함 해)	박상옥 장로(충 북)
평신도위원회	서은성 목사(서 울 북)	이대희 목사(서 울 동 남)	강성수 장로(울 산)
남북한선교위	이준삼 장로(서 울 동 남)	유갑준 목사(광 주)	임성학 장로(포 향 남)
훈련원운영위	박석진 목사(포 향)	배규현 목사(순 천)	남상철 장로(안 양)
이단사이비대책위	심상효 목사(대 전 서)	박홍길 목사(강 원 동)	최규재 장로(순 천)

4. 정기위원회

위 원 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선거관리위	김순미 장로(서 울)	박남석 목사(전 주)	송인화 장로(영 주)

5. 재단 및 기관

기 관 명	이 사 장	서 기 이 사	회 계 이 사
유 지 재 단	림형석 목사(안 양)	신동설 목사(대 전 서)	장인수 장로(대구서남)
연 금 재 단	제종실 목사(경 남)	진달중 목사(전 서)	김대섭 장로(경 서)
복 지 재 단	민정설 목사(서울서남)	조건희 목사(서 울)	김종생 목사(서울동남)
실로암재단	김선태 목사(서 울)	이순창 목사(평 북)	
장 학 재 단	김영철 목사(서울관악)	이필산 목사(용 천)	김종식 장로(서울동남)
문 화 법 인	손신철 목사(인 천)	정기수 목사(서울강동)	
장로교출판사	남성현 목사(전 남)	최에릭 목사(서울관악)	류재돈 장로(진 주 남)
한국기독교공보사	신정호 목사(전 주)	이종삼 목사(경 남)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조재호 목사(서울서남)	주현신 목사(서 울 남)	여충호 목사(서 울 남)
손양원사업회	김의식 목사(영 등 포)	강점석 목사(여 수)	방성환 장로(영 등 포)
한국교회연구원	채영남 목사(광 주 동)	김의식 목사(영 등 포)	신용식 장로(서울강남)

6. 인사 인준

- 1)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최홍진 목사(신임)
- 2)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채은하 목사(신임)
- 3)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이창규 장로(신임)

II. 교 세 (2019. 12. 31. 현재)

번호	구분	통계수		증 감 (A-B)	증감율 (%)	비고
		2019년(A)	2018년(B)			
1	노 회 수	68	68	0	0.00%	
2	교 회 수	9,288	9,190	98	1.07%	
3	목 사 수	20,775	20,506	269	1.31%	
4	전 도 사 수	2,796	2,831	-35	-1.24%	
5	교육전도사수	3,797	3,933	-136	-3.46%	
6	장 로 수	32,511	32,278	233	0.72%	
7	안수집사수	77,983	77,759	224	0.29%	
8	권 사 수	182,292	179,572	2,270	1.51%	
9	서리집사수	581,000	589,525	-8,525	-1.45%	
10	제 직 수	869,830	879,154	-9,324	-1.06%	
11	세례교인수	1,674,221	1,681,531	-7,310	-0.43%	
12	전체교인수	2,506,985	2,554,227	-47,242	-1.85%	유아세례포함
13	결 산 액	1,415,077,887천	1,382,961,481천	31,475,234천	2.27%	2018년도 경양수입 결산액

III. 제 105회 총회 주요 결의

〈 9월 21일 본 회의 〉

1. 절차채택

서기 조재호 목사가 제105회 총회 절차를 별지(회의안 11쪽)와 같이 보고하니 임의로 받기로 결의하다.

2. 총회임원 선거

가. 총회장 승계 공포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1항에 의거 현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전주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장직을 자동승계함을 보고하니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이를 선포하다.

나. 부총회장 선거

- 1)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목사부총회장 투표 결과 총투표수 1,461표 중 류영모 목사가 찬성 1,246표, 반대 215표로 찬성 과반수를 득표하였음을 보고하니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으로 류영모 목사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 2)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장로부총회장 투표 결과 총투표수 1,461표 중 박한규 장로가 찬성 1,220표, 반대 241표로 찬성 과반수를 득표하였음을 보고하니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박한규 장로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다. 여타 임원 선거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6항에 따라 신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추천한 여타 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니 만장일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다음과 같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서 기 : 윤석호 목사(인천동)

부 서 기 : 최충원 목사(경기)

회 록 서기 : 박선용 목사(충청)

부회록서기 : 김준영 목사(목포)

회 계 : 장오표 장로(서울동북)

부 회 계 : 최효녀 장로(서울강북)

3.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장 정 훈 목사의 공천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임시보고로 받고 미진 보완 사항은 폐회후 공천위원회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가. 청원

- 1) 제 105회 총회 상임부, 위원회와 정기위원회, 총회 주요부서 공천(안) 및 총회 산하기관 임원 공천(안)을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보고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임시보고로 받고 미진 보완사항은 폐회후 공천위원회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4. 현의위원회 보고

현의위원장 신정호 목사의 제 105회 총회 현의안 보고는 별지(회의안 356-79쪽과 추가보고서 17-23쪽)와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5. 총회 임원회 및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총회임원회 및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는 완전보고로 받다.

가. 청 원

- 1) 향후 7년간 본 교단 정기총회 일정을 사전에 다음과 같이 결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하다.

가) 제 104회 총회시 총회혁신 및 기구개혁위원회의 청원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 회의일정을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3일로 조정한다”라는 문구로 제 105회 총회에서 총회규칙이 개정 가결되어 정기총회를 3일 일정으로 할 경우

- 1) 제 106회 총회 : 2021.9.28(화)-9.30(목) 추석연휴 : 9.20(월)-9.22(수)
- 2) 제 107회 총회 : 2022.9.20(화)-9.22(목) 추석연휴 : 9.9(금)-9.11(주일)
- 3) 제 108회 총회 : 2023.9.19(화)-9.21(목) 추석연휴 : 9.28(목)-9.30(토)
- 4) 제 109회 총회 : 2024.9.24(화)-9.26(목) 추석연휴 : 9.16(월)-9.18(수)
- 5) 제 110회 총회 : 2025.9.23(화)-9.25(목) 추석연휴 : 10.5(주일)-10.7(화)
- 6) 제 111회 총회 : 2026.9.15(화)-9.17(목) 추석연휴 : 9.24(목)-9.26(토)
- 7) 제 112회 총회 : 2027.9.28(화)-9.30(목) 추석연휴 : 9.14(화)-9.16(목)

나) 제 105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 부결되어 정기총회를 4일 일정으로 할 경우

- 가) 제 106회 총회 : 2021.9.27(월)-9.30(목) 추석연휴 : 9.20(월)-9.22(수)
- 나) 제 107회 총회 : 2022.9.19(월)-9.22(목) 추석연휴 : 9.9(금)-9.11(주일)
- 다) 제 108회 총회 : 2023.9.18(월)-9.21(목) 추석연휴 : 9.28(목)-9.30(토)
- 라) 제 109회 총회 : 2024.9.23(월)-9.26(목) 추석연휴 : 9.16(월)-9.18(수)
- 마) 제 110회 총회 : 2025.9.22(월)-9.25(목) 추석연휴 : 10.5(주일)-10.7(화)

바) 제 111회 총회 : 2026.9.14(월)-9.17(목) 추석연휴 : 9.24(목)-9.26(토)

사) 제 112회 총회 : 2027.9.27(월)-9.30(목) 추석연휴 : 9.14(화)-9.16(목)

- 2) 제 103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제 105회기 총회 특별위원회는 15개로 제한되므로 이번 제 104회 총회시 존속 또는 신설이 허락되는 총회 특별위원회의 통폐합 조정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하다.
- 3) 총회 헌법위원회가 국가재난시 총회 회집 및 진행에 대한 내용과 총회 재판국 권한 제한 문제를 헌법으로 조문화하도록 헌법 개정(조문 삽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하다.
- 4)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제 3조를 국가재난의 특별상황하의 경우에는 각종 회의를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결의하다.
- 5) 제 105회 총회 상임부,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간과 여타조건상 총회기간(1일)에 불가하므로 총회 폐회후 9/22일(화) - 9/25일(금)까지의 일정으로 다음과 같이 각 부,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총회본부 대강당, 소강당, 연수실에서 분산 회집하여 조직 구성 및 헌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하다.
- 6) 교회 갈등 해결을 위하여 “화해조정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 구성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재난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칭)재난대처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 구성해 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하다.
- 7) “(가칭) 회복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 구성해 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하다.

나.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

1) 총회주제연구위원회

가) 본 위원회 계속 존속 청원은 허락하다.

2) 동성애대책위원회

가) 총회 특별위원회로 위원회 편제 청원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3) 기독교학원위원회

가) 본 위원회 계속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4)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위원회

가) 본 위원회 계속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나) 현재 본 기념관 착공식 후 본격적인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모금활동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104회기 위원들을 3분의 2이상 연임해 주기를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5)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나) 각 노회는 소속 교회와 노회의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한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연직 위원장으로 목사 부노회장을 선임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라)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연구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6. 총회연금재단 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제종실 목사의 보고는 임시보고로 받다.

가.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이창규 장로 인준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박수로 인준을 허락 결의하다.

7. 신학교육부 보고

제 104회기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의 보고는 임시보고로 받다.

가. 청원

1)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이 제출한 임성빈 목사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인준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로 결의하여 투표한 결과 총투표수 1,341표 중 찬성 637표, 반대 704표로 찬성이 총투표수의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인준 부결됨을 총회장이 선포하다.

2)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이 제출한 최홍진 목사의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인준 청원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로 결의하여 투표한 결과 총투표수 1,305표 중 찬성 1,217표, 반대 88표로 찬성이 총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인준 가결됨을 총회장이 선포하다.

- 3)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이 제출한 채은하 목사의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인준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로 결의하여 투표한 결과 총투표수 1,303표 중 찬성 1,235표, 반대 68표로 찬성이 총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인준 가결됨을 총회장이 선포하다.

8. 결의

헌법 개정, 제 규칙 제정 및 개정, 이단사이비 규정 등 법리부서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청원건은 제외하고 미진안건 처리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하기로 결의하다.

< 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회의 결의 / 총회 임원회 제105-1차, 2차 회의 >

(총회 임원회)

1. “제105회 총회 미진 안건 확인 및 처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헌법 개정, 제 규칙 제정 및 개정, 이단사이비 규정 등 법리부서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청원건은 제외하고 미진안건 처리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함)
 - 가. 제105회 총회 보고 미진 각 부, 위원회(44개) 및 산하기관(재단/11개) 보고는 진행하다.
 - 나. “제106회 총회(2021. 9.28-9.30 예정) 장소 결정 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다. “제105 총회(9월 21일) 회의록 채택 건”은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하다.
2. “향후 7년간 본 교단 정기총회 일정을 사전에 결정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건(총회임원회 보고시 결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의하다.
 - 가. 제 106회 총회 : 2021.9.27(월)-9.30(목) 추석연휴 : 9.20(월)-9.22(수)
 - 나. 제 107회 총회 : 2022.9.19(월)-9.22(목) 추석연휴 : 9.9(금)-9.11(주일)
 - 다. 제 108회 총회 : 2023.9.18(월)-9.21(목) 추석연휴 : 9.28(목)-9.30(토)
 - 라. 제 109회 총회 : 2024.9.23(월)-9.26(목) 추석연휴 : 9.16(월)-9.18(수)
 - 마. 제 110회 총회 : 2025.9.22(월)-9.25(목) 추석연휴 : 10.5(주일)-10.7(화)
 - 바. 제 111회 총회 : 2026.9.14(월)-9.17(목) 추석연휴 : 9.24(목)-9.26(토)

사. 제 112회 총회 : 2027.9.27(월)-9.30(목) 추석연휴 : 9.14(화)-9.16(목)

3. 제 105회 총회시 총회임원회에 일임 결의한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의 중요 청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가. 각 노회는 소속 교회와 노회의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한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연직 위원장으로 목사 부노회장을 선임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제 105회 총회시 총회임원회에 일임 결의함)은 노회에 권고사항으로 허락하다.

나.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제 105회 총회시 총회임원회에 일임 결의함)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다.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연구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제 105회 총회시 총회임원회에 일임 결의함)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4. 정치부의 현의안 심의 보고중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 전북노회장 이동춘 장로,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 순천남노회장 이성재 목사,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 평북노회장 김상곤 장로, 용천노회장 하충렬 장로가 제출한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 차기회의 시 결정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정치부가 심의하여 보고한 결과(“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건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정치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총회 임원회로 반려(이첩)”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보고)에 대하여 “보고 내용상 명확한 처리 방안이 미흡하고 애매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상세하게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재보고하도록 결의하다”

(상임부, 상임 위원회)

1. 정치부

가. 현의안 심의결과 보고

1)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

사, 전북노회장 이동춘 장로,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 순천남노회장 이성재 목사,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 평북노회장 김상곤 장로, 용천노회장 하충렬 장로가 제출한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 차기회의 시 결정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가 제출한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자문기구)의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달라는 건 및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동성애 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달라는 건과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대책위원회를 특별 상임위원회로 신설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 차기회의 시 결정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3)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용서 화해의 날” 제정을 위한 총회결의로 정부가 화해의 날을 법제화 해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한회기 계속 연구하기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4)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제105회기 총회를 화해 용서 회복의 날로 해 달라는 건은 총회 임원으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5) 서울강북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NCCK, WCC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정리와 도움되지 않을시 탈퇴해 달라는 건과
-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NCCK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과
- 7)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NCCK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과
- 8) 천안아산노회장 임형진 목사가 제출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를 소환해 달라는 건과
- 9) 부산노회장 강상국 목사, 부산동노회장 전재전 목사,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NCCK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는 건은
이상 5)-9)번 까지는 정치부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0)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이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1) 전북노회장 이동춘 장로가 제출한 ‘미디어선교부’(가칭)를 개설해 달라는 건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2)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교단산하 68개 노회에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달라는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3) 평북노회장 김상곤 장로가 제출한 긴급 상황 시 총회의 비상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를 조직해 달라는 건은 총회 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4) 대구서남노회장 김해봉 목사가 제출한 성서공회에서 임의로 성경을 번역하여 수정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건은 총회 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5) 충북노회장 서충성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 차기회의 시 결정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16)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립해 달라는 건은 실사 후 결정하기로 하되 정치부 차기 회의시 실사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청원

- 1) 수임안건 보고 1.과 같이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특별총대) 실천 연구 방안”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한회기 더 연구하도록 하다.

2. 규칙부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미가입자는 총회부총회장과 총회 임원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이 재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년10억으로 제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3)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의 연금지급에 있어서 연령별 지급안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4)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제104회 총회 수임안건 처리 결과 보고

- 1) 경안노회장 이위철 목사가 제출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3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1년간 연구토록 한 결의 후속조치는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대구동노회장 김병옥 목사가 제출한 각 교회 정관을 노회 규칙부가 감독할 권한을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1년간 연구토록 한 결의 후속조치건은 ‘지교회를 감독하는 권한은 노회에 주어진 것이므로 해 노회가 결의 혹은 규정을 정하여 시행

함이 가하며 총회가 제정한 표준정관에 근거하여 노회가 지도 감독할 수 있다'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3) 총회 산하기관 정관 지침으로 “총회 산하기관(단체 및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필수 포함 사항 지침(안)”을 총회 산하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한 건 후속조치(제 104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4-2차 회의시 결의 - 총회산하기관과 선교지재산 및 일신기독병원연구위원회 청원사항)는 한 회기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4) 상임부위원회 부장·위원장은 한 사람이 최대 2번까지만 하도록 제한하여 달라는 건을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건은 상임부위원회 부장·위원장은 한 사람이 최대 2번까지만 하도록 제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총회 미진안건 총회임원회 2차 회의중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보고서 결의)는 “총회 부·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제104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허락결의 후속조치는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3. 재정부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를 30% 감면해 달라는 건과 인천노회장 문철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 부과액의 20%를 감면해 달라는 건과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회비를 감면해 달라는 건은 제 105회기 예산안은 전회기 예산 대비 10억 5천996만원(10%)이 감소한 95억 4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회비는 3년연속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하여 3년간 3억5천400만원(7.85%)이 감소되었고,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차기에는 더 큰 폭의 감소가 일어 날것으로 예상되므로 불가하며 점차적인 재정 감축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가 결의한 상회비 3%를 총회연금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을 지켜달라는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도 동일한 헌의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채택된 것과 같이 연금재단에 노회상회비 3% 출연 건은 연금재단 자체 규정이 결의된 것으로 총회 상회비와 관련하여 총회재정부의 허락 없이는 총회예산에 반영 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세례교인수 감소로 인하여 총회상회비가 매년 2%씩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는 노회상회비를 3%

인상하지 않는 한 출연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3) 포항남노회장 이하준 목사가 제출한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건은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 건은 그동안 지역노회를 중심으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의 모금을 없앤 총회에서 전국적인 모금 허락은 불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청원

- 1) 제105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제105회기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제105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 국내선교부

가. 청원

- 1) 제105회기 국내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 조직(국내선교부 산하)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 교육자원부

가. 현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 서울동북노회장 소원섭 목사,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교회학교 ‘청소년(중·고등부) 주일’을 제정해 달라는 건은 교육자원부에서 계속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광주노회장 이명섭 목사가 제출한 광주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총회 공과에 수록해 달라는 건은 교육자원부에서 계속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청원

- 1) 제105회기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6. 사회봉사부

가. 현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제정위기에 따른 대처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과 부산노회장 강상국 목사, 부산동노회장 전재전목사,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 경북노회장

하동오 목사가 제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과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0>은 교단의 독자적인 대응보다 한국교회총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범개신교단 전체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회 해당 위원회 및 개별의원들을 접촉하여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입법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극단적 허위정보를 배격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법리 및 헌법의 기본권(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기초한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이의 홍보를 대사회적차원까지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하기로 함이 가하다고 보고는 받다.

- 2)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가 제출한 다자녀 출산 장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1>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회 임원회의 소관이므로 한 회기동안 사회문제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총회 특별위원회 청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함이 가하다고 보고는 받다.
- 3)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노회 산하 피해보상을 지원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2>은 2018년 지진발생 후 1~4차에 걸쳐 5개 노회, 69개 교회, 1개 기관에 520,219,41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6월 30일 포항노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관한 노회산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사정비 지원 요청으로 33개 교회의 사정비(1교회 40만원)1,320만원을 지원하였기에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보고는 받다.

나. 청 원

- 1) 제105회기 사회봉사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2020년도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을 별지와 같이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전국 노회가 노회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며, 이를 매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사회봉사부 산하단체인 전국사회선교협의회는 활동이 미미하므로 산하단체 허락을 취소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7. 신학교육부

가. 현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가 제출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의 연임을 불

가하게 해달라는 건은 총회 본회의에서 연임 부결되었으므로 종결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총회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의 이사선임을 제한해 달라는 건과 순서노회장 황점선 목사가 제출한 총회직영신학대학교의 이사는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같은 대학교 출신은 1/4 이상 임원선임을 제한해 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에서 한회기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3) 진주남노회장 류재돈 장로가 제출한 신학대학교수(정교수, 부교수)로 재직하는 자는 교단 산하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에서 한회기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4)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청목과정 목회자 및 본 교단 신학교의 교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면접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달라는 건은 총회의 결의가 각 학교의 정관에 삽입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교원임용절차에 따라 학교가 선임하는 권한이 있기에 불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5)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와 관련하여 신학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 제외)의 학부 입학 자격 제한 및 징계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에서 한회기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청원

- 1)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이사장이 보내온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여 차기임원회에서 결의하기로 하다.
- 2)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이 보내온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여 차기임원회에서 결의하기로 하다.
- 3) 제105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원을 복수 공천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제105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임원을 복수 공천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5) 제105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학대학교) 임원을 복수 공천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6) 제105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임원을 복수 공천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7) 제105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임원을 복수 공천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8) 제105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임원을 복수 공천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9) 제104회 총회 수임안건인 목사학 개설 건에 대해 총회의 (부)목사계속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총회 훈련원에서 목회자의 소명과 인성교육을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8. 세계선교부

가. 청원

- 1) 제 105회 총회 세계선교부 사업운영예산(안)을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 하게 선교사들이 국내에 체류하게 될 경우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각 후원교회에서 선교사들의 국내체류에 대한 허락과 지속적인 후원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세계선교부 행정부 명칭을 ‘해외다문화선교처’에서 ‘세계선교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하다.
- 4) 세계선교부가 국내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법 제27조의4항(선교 목사)의 내용 중, 기존 해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국내에서도 다문화선교사역, 총회본부, 선교협력기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5) 근속선교사 표창 추가 청원건은 허락하고 총회회의록에 수록하기로 하다.

9. 군경교정선교부

가. 청원

- 1) 제105회기 군경교정선교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2020년도 목사고시에 합격한 군종사관후보생(1명)이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해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하여 군종목사로 파송함에 차질이 없도록 목사 안수해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0. 농어촌선교부

가. 청원

- 1) 제105회기 농어촌선교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교회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중 농어촌교회에 대한 적극 지원 청원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1. 고시위원회

- 가. 2020년 목사고시 합격자 보고는 별지(보고서495-502쪽과 추가보고서2의 17쪽)와 같이 받다.

1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가. 청원

- 1) 제105회기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가 평화통일 및 북한선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선교대학원을 본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가 실사 후에 허락하기로 하다.

13. 평신도위원회

가. 청원

- 1) 제105회기 총회에서 여전도회관 문제에 관하여 평신도위원회가 화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전도회관 문제의 당사자들이 배제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2) 제101회 교단총회에서 평신도지도위원회를 ‘평신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산하 단체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명칭을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하다.
- 3) 본 교단 제95회 총회에서는 교회와 사회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교회 남여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평신도교육대학원’ 졸업생과 ‘여전도회계속교육원’ 졸업생들에게는 교회장로로 피택되었을 경우 ‘노회 장로고시’를 면제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4) 연합회 가입 및 협력 : 본 교단 9,190여 교회 중 여전도회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교회는 3,104여 교회에 불과하니 모든 교회의 여전도회가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해주시고, 여성지도자 배출을 위해 계속교육원 교육에 적극 협력, 권면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5) 제84주년 여전도회주일(2021. 1. 17) : 본 교단 총회가 복음선교를 향한 여전도회의 열정과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제25회 총회시(1936년)에 제정한 여전도회주일을 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지켜주심으로, 여전도회의 선교, 교육, 봉사

연합사역이 지속적으로 실행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6) 여성 총대 할당제 의무화 : 여성안수 법제화가 허락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성 총대 비율은 2%를 넘지 못하므로 노회별 총대를 선출할 때 여성목사 1인, 여성 장로 1인을 반드시 총대로 선출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14. 훈련원운영위원회

가. 청원

- 1) 제105회기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원장 박기철 목사의 연임 청원건은 만장일치로 박수로 허락하다.

15. 헌법위원회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서울관악노회장 이경희 장로가 제출한 총회 총대 수를 700명으로 축소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제출한 신앙양심과 총회헌법에 따라 동성애자를 안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3) 인천동노회장 김진욱 목사가 제출한 연금미가입 및 계속납입을 못함으로 무임목사 후 목사해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4) 충청노회장 신창섭 장로가 제출한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시행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5)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6)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재판국을 화해조정심판국(재판국)으로 개편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7)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담임목사 연임 청원에 관련한 정치편 제28조 제3항의 3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8) 총회 농어촌선교부장 김한호 목사가 제출한 농어촌교회 폐당회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청원

- 1) 헌법위원회가 제104회 총회에서 한 회기동안 연구하도록 허락한 헌법개정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청원한 헌법개정(안)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16. 감사위원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503-516쪽과 별책)와 같이 받다.

17. 재판국

- 가. 경과보고와 판결, 결정보고는 별지(보고서 264-325쪽과 추가보고서1의 48-68쪽)와 같이 받다.
- 나. 총회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18.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포항남노회장 이하준 목사가 제출한 각 노회에 이단상담소 설치 및 총회에 이단 전문가 양성기관을 설치해 달라는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특별위원회)

1.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총회 임원회에서 평신도위원회로 보낸 ‘청년위원회 업무 이관(관련 근거 예장총 제 102-54호)’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청년과 관련된 조직(장청, 청년위원회, 청년분과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교단 내에 청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총회 혁신및기구 개혁위원회로 보내기로 한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현재 청년과 관련된 조직인 청년회전국연합회가 교육훈련처 산하 기관이므로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훈련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하되, 청년과 관련된 지도, 조직, 교육과 훈련, 행정, 재정 및 관련 제반 규정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교육자원부에서 시행하도록 허락하다.
- 다. 세계선교부 기구개혁연구에 대한 보고 및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 혁

신밋기구개혁위원회로 보내기로 한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라. 대전서노회장 이승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해 달라는 건과 충북노회장 이종민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만이 아니라 젠더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젠더주의(동성애 포함)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달라는 건과 함해노회장 안요한 목사가 제출한 국가적 젠더주의를 막기 위한 젠더주의(동성애를 포함)대책위원회를 총회에 설치해 달라는 건과 충북노회장 이종민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 확산 방지 및 근본 대책을 위하여 총회 내에 “동성애 대책 연구소”를 신설해 달라는 건은 동성애대책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는 총회 혁신밋기구개혁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이단사이비및동성애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성애 대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되 동성애대책위원회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마.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총회 별도위원회) 업무를 일원화해 달라는 건은 총회 혁신밋기구개혁위원회로 보냄이 가하다는 보고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바. 현행 전자투표 방식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현행보다 50% 증설하는 것과 다양한 전자투표 방식을 연구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사. 현행 ‘정책 총회, 사업 노회’를 ‘정책 총회, 사업 권역, 목회와 행정 노회’로 변경하는 청원에 대한 시행 방안 연구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아. 총회 혁신밋기구개혁위원회에서 총회의 기구 역할에 대한 연구, 기구별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총회 중장기 개혁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건은 총회의 기구 역할에 대한 연구, 기구별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총회 중장기 개혁안 연구는 혁신밋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되, 총회본부 개혁이 시행되어 정착된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기구개혁 종합 진단 및 조직 평가를 위해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안에 총회본부 내·외부 전문가로 총회본부 기구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여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자. 조직과 직제의 측면에서 총회나 노회 기구 속에 나타나는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개별 교회 당회의 과도한 기능 집중과 경직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목사들과 장로의 임기제(재신임제) 등을 연구, 검토하여 공론화의 장을 열어 달

라는 건은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차. 총회 상담학교에 대한 총회 차원의 상담소 설치 청원 건은 자립할 수 있는 운영 능력 확인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노회 자체 운영, 종합상담소 설치 등을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총회 외부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국내선교부에서 시행하도록 허락하다.

카. 현재의 5, 60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총회 연금재단 이사 구성을 30대, 40대, 50대, 60대 세대별 균형 있는 대표 이사의 구성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정책 운영이 되도록 이사 공천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세대별 균형 있는 공천이 되도록 해 기관(공천위원회, 연금재단)에 권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타.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가 본회 설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순교순직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본 선교회가 행정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청원한 건은 총회 역사 기록 보존, 인물 및 사료 발굴, 교육과 기념사업 등 여러 업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 신앙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역사위원회,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등 관련 기관 통합과 창구 일원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파.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유럽-중동-아프리카 선교노회 전환 청원의 건은 선교노회 전환은 불가하다. 단, 선교 현장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하.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여성 총대 확대, 증원하는 방안에 관한 건은 각 노회별로 총대 1인을 여성 총대로 선출하여 줄 것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거.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교회 자율권을 강화하여 교회 내규(정관) 표준안을 제정하는 방안에 관한 건은 제102회 총회 때 규칙부 청원으로 제정된 교회정관(표준)이 있으므로 제정된 정관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너.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서리집사’ 호칭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은 현행 헌법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다.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목사계속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목사장로계속교육을 받도록 노회에 권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리.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 연구 방안에 관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머.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노회 회원의 목사, 장로 비율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은 각 노회별 목사, 장로 비율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버.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방향(패러다임) 재설정 방안에 관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서. 제 103회 총회시 결의한 총회직원 직급직제 시행 청원건은 제2인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2. 세대별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미래비전위원회

- 가. 본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4. 에큐메니칼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5. 역사위원회

- 가. 본 위원회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제39호 ‘비금덕산교회 노트’, 제40호 ‘후평교회 구 한옥예배당’ 지정인준과 총회장의 사적지 지정 공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6.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 가. 총회역사관은 종전 구 선교사사택 공간 활용에서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2층 전체 공간으로 변경하여 조성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나. 총회 역사관 추진을 위해 동 위원회 존속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7.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10년)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8. 양성평등위원회

가.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총대 할당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말미암아 권고사항으로 해석한 것은 아쉬움과 이해 부족으로 여겨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하고 노회별 총대를 뽑을 때에 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하는 ‘여성총대할당제’를 다시 청원하는 건은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나. 여교역자의 사역 확장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여교역자 사역연구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여성목회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다. 양성평등교육이 교단 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68개 노회에서는 목회자 훈련 등에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청원하는 건은 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라. 본 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도록 청원하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9. 인권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0. 교회연합사업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나.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가 제출한 교회연합기관 지정 및 총대 이사 파송 청원 건은 다음 회기에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다. 교회연합사업기관 공천을 별지와 같이(기독교방송 전문이사 양혁승 장로 포함)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1. 이슬람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나. 한국사회에서 점점 확산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대응 방안 교육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인 본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다. 교회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한 이슬람 대책 영상 제작 예산 15,000,000원과 단군상 문제 대책 사업을 위한 예산 7,500,000원 배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라. 제89회 총회 때 10월 3일을 포함한 첫 주일을 단군상문제대책 기도주일로 정했으므로 전국 노회와 교회가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1) 전국 교회가 총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설교 또는 교육하여 주실 일
- 2) 각 특별집회 때 기도해 주실 일
- 3) 각 노회 및 교회 또는 기관, 신학교에서 단군상 문제 대책에 대한 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여 주실 일

12.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3. 교회동반성장위원회

가. 제105회기에도 본 위원회를 존속해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나. 노회 분립시 분립된 각 노회가 해 노회 소속 자립대상교회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노회 분립을 허락하는 조항을 헌법시행규정에 아래와 같이 삽입해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제안설명 : 교회동반성장사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헌법시행규정 제32조(노회의 분립, 합병)에 ‘지원하는 노회가 분립할 경우 분립된 노회들은 반드시 지원하는 노회가 되며, 자립노회가 분립할 경우 분립된 노회들은 반드시 자립노회가 되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노회 분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주시고, 정치13호 서식 노회 분립(합병)청원서의 첨부 서류에 ‘노회내, 노회간 자립대상교회 지원방안 합의서’를 추가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1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을 <별지2>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4.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5. 한국교회언론홍보위원회

가. 본 위원회를 한국교회가 언론에 대하여 바르게 소통하고 대응하며 한국교회의 진

정성을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NCCK와 한교총이 연합하여 범한국기독교언론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사회언론대책 및 대응을 위한 기구를 한국교회언론홍보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총회임원회 자문, 별도, 정기위원회)

1.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788-791쪽과 추가보고서 2의 20-21쪽)와 같이 받다.
- 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존속 여부는 총회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2.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 가. 본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헌법개정위원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775-777쪽)와 같이 받다.

4. 7개신학대학구조조정위원회

- 가. 각 신학대학교의 정관변경, 재산처리, 해산에 관한 정관의 통일성을 신학교육부에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나. 교단의 목회자 수급 조정을 위해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원의 정원을 3년간 12% 줄이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로 보내기로 하다.
- 다. 교단 신학대학원의 정원은 조정하되,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각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하며 독자적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총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로 보내기로 하다.
- 라. 제105회기에도 본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5.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계속 존속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6.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

- 가. 본 위원회 존속과 위원 연임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7. 공천위원회(추가)

- 가. 총회공천조례 중 총회연금재단 감사 공천을 전문인(공인회계사)으로 공천하도록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하다

8. 선거관리위원회

- 가. 본 위원회 위원은 매년 단임으로 배정되어 선거업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도별 공천하여 원만한 선거관리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하다.

(재단 및 산하기관)

1. 총회유지재단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615-621쪽과 추가보고서1의 187-188쪽)와 같이 받다.

2. 총회연금재단

- 가. 당 법인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33기 예산(안)을 제출하니 허락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한국기독교공보사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649-656쪽)와 같이 받다.

4. 한국장로교출판사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657-667쪽)와 같이 받다.

5.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632-645쪽)와 같이 받다.

6. 총회문화법인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668-678쪽)와 같이 받다.

7. 총회장학재단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697-699쪽과 추가보고서1의 182-186쪽)와 같이 받다.

8. 지구촌의료개발기구

- 가. 제105회기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9. 한국교회연구원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04-712쪽)와 같이 받다.

1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가. 총회는 장애인헌장을 선포하고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주일을 통해 장애인복지선교에 교회들의 적극 참여와 해당 주일 헌금이 장애인 선교와 구호기금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과
- 나. 장애인주일을 통해 총회의 자랑스러운 기관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 대한 총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하는 건과
- 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200명의 종사자와 400여명의 보조인이 매년 4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총회 기관으로 이러한 사업에 총회와 교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1.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 가. 총회파송 이사 2인 중 장로 이사 1인을 공천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70주년 기념사업 중 <만화 손양원> 판매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다. 70주년 기념사업 중 <드라마 손양원> 전국공연을 2021년도 여수시 문화예술사업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총회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라. 재정보조청원 <드라마 손양원> 전국공연비 보조 5,000,000원을 청원하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